

#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평생교육법 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4항에

근거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지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 학생의 경우, 현 조례의 한계로 인하여 장학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
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대학 학생이

서울시 장학재단 장학금의 지급 및 선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 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 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